

- 세종시의회 -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2026.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 회 사 무 처

목 차

I.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점검 및 개선절차	1
붙임 1. 시설별 유해·위험 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3
붙임 2.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대장	6
II.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7
붙임 3.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13
붙임 4. 상황판단 회의자료	19
붙임 5. 재발방지 계획서	22
붙임 6. 비상연락망	25
III. 사고 유형별 발생 시 표준 대응방안	27
1. 화재	27
2. 지진	34
3. 테러	38
4. 침수	44
5. 붕괴	45
6. 폭설	49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응 매뉴얼

I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점검 및 개선절차

□ 개 요

-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제7호 가목 및 나목
- (주요내용) 안전관리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개선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 마련 및 이행

□ 추진 사항

- (확인·점검) 공중이용시설 점검·육안관찰로 유해·위험요인 확인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정기점검을 통한 요인 확인
 - * (예)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 등(「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제외)
 - 재해 예방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수시점검*을 통한 요인 확인
 - * [붙임 1] 점검 체크리스트 / [붙임 2]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대상
- (신고·접수) 시민 등 이용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 신고·접수
 - ※ 시설물 관리부서에 시민 등 이용자가 직접 신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가능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신고된 사항을 즉시 접수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여부 확인 및 경영책임자 보고
- (개선조치)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 실시
 - (경미한 경우) 유해·위험요인 확인 후 즉시 개선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관리부서는 사용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보수·보강 등 조치
 - 관리부서는 필요 시 긴급안전조치 및 긴급안전진단 등 실시
 - 관리부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조치결과 보고 및 신고자에게 통보
 - 경영책임자는 추가 보수·보강지시 및 조치결과 확인
 - 해당 사항 유사 시설 전파·공유

<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조치·개선 표준 체계도 >



붙임 1

시설별 유해·위험 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 공통분야

구분	점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공통 분야	1. 이력카드의 구비 및 기록여부(소방계획서)				
	2.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부재시 대응방안 수립 여부				
	3. 긴급재난시 대피지침 수립여부				
	4. 비상연락망 구비여부				

□ 건축분야

구분	점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요 시설	1. 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2. 기둥(내력벽 등)의 변형 및 균열 상태				
	3. 슬래브(바닥판)의 변형 및 균열 상태				
	4. 주계단의 변형 및 균열 상태				
	5. 벽체의 변형 및 균열 상태				
	6. 지반 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7. 누수,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8.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상태				
일반 시설	9. 지붕(옥상)의 균열 및 상태				
	10. 계단실(복도)의 균열 및 상태				
	11. 외벽타일 또는 석재의 균열 및 탈락상태				
	12. 시설 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여부				
	13. 강재의 도장 및 관리상태				
부대 시설	14. 옹벽, 석축 및 담장의 균열 및 상태				
	15. 마감재(광고판 등)의 돌출 및 위험요소(충돌, 안전사고) 여부				
	16. 상 하수도주변 시설 파손 및 누수				
	17. 대형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안전성 및 관리상태				
	18. 안전망 등의 설치여부 및 상태				
	19. 공사용 안전 가시설 등의 설치여부 및 상태				

□ 전기분야

구분	점검항목	점검 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인입구 배선 (육안으로 점검할 것)	1. 규격 전선의 사용 여부				
	2. 전선 접속 상태				
	3.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4.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옥내배선 (옥외, 옥측배선 포함) (육안으로 점검할 것)	5. 규격전선의 사용 여부				
	6. 전선 피복의 손상 여부				
	7. 배선공사 방법의 적합 여부				
	8. 비닐 코드선 사용 및 문어발 배선 사용 여부				
	9. 보행로 전선 노출여부				
누전차단기	10.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11. 열화 및 손상 여부				
개 폐 기 (차단기를 포함한다)	12. 개폐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위치의 적합 여부				
	13. 개폐기의 열화 및 손상 여부				
	14. 정격퓨즈의 사용 여부				
	15. 개폐기의 결선 상태				
	16. 다선식 선로의 각극 개폐장치 여부				
비상전원설비	17. 정전시 비상전원확보(비상발전기, UPS) 및 정상운전 여부				
배 전 반	18. 배전함 커버손상 및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밀봉여부				
부하설비	19. 전기기계기구 금속제 외함 접지 및 접지용 콘센트 사용여부				
조명시설	20.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상태				

□ 기계분야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시설영역	1. 배관의 파손·누수·누기 및 유지관리 상태				
	2.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3. 보일러, 공조시설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4. 기계실 모든 자재의 정리 정돈 상태				
	5. 지하설비 누수 상태				
	6.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7.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8. 기계식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9.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의 비상운전 작동상태 여부				
	10. 승강기 내·외부 안전표지 부착 확인 등				

점검일자 : . . . / 점검자 : (서명)

붙임 2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대장 (양식)

유해·위험요인 점검 관리대장											
☐ 시설명 : 학나래교 ☐ 부서명 : 00과 00담당 ☐ 담당자 : 시설8 김세종 ※ 분야별로 담당자 있는 경우 : (건축) 시설8 000, (전기) 공업8 000											
연 번	점검 일자	점검유형		지적 건수	점검결과 주요내용	조치결과					
		분야	점검주체 (업체명, 기관명 등)			조치건수			조치계획 (조치종만 작성)		
						계	완료	조치중			
1	'23.3.30	신고	민원	1	바닥파손	1	1	0	-		
2	'23.3.30	신고	안전신문고	1	난간파손	1	1	0	-		
3	'23.6.1	자체	관리주체	4	소화기 기한경과 등	4	2	2	4월 완료예정		
4	'23.7.12	대행	OO소방	5	소방알림기 작동불량 등	5	4	1	9월 완료예정		
5	'23.10.5	기관	기관명	4	...	4	4	0	-		
6	'23.11.20	기관	부서명(市)	3	...	3	3	0	-		
7	...	...	...	..	...	...	...	...	...		

○ (점검유형) ① 신고(민원, 국민·안전신문고 등), ② 자체(관리주체) ③ 대행(소방, 전기, 승강기 등 대행업체)*, ④ 기관(정부,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 「시설물안전법」상 점검·진단 외 안전보건관계법령 상 점검(예. 전기안전점검, 소방정기점검, 승강기안전검사,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수조 수질검사 등)

※ 유해·위험요인 점검 실적은 본 관리대장에 작성된 건만 실적으로 인정

II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개요 >

① 신고 및 초기전파		② 현장 긴급조치 (긴급구조, 추가 피해방지 동시추진)	
최초 발견자 119, 112신고, 재해상황 공유	구급구조, 병원 후송, 시민·직원 대피	작업중지, 출입·교통 통제 등 이용제한	현장확인, 보존 등
상황실, 시설물 관리부서, 관리팀, 소방·경찰 등	시설물 관리부서 소방·경찰 등	시설물 관리부서 소방·경찰 등	시설물 관리부서
③ 상황 보고	④ 상황대응	⑤ 구호 및 복구	⑥ 후속조치
상황 보고 (SNS 대응방 운영 등)	대응기구운영(필요 시)	구호 및 복구조치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등)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시설물 관리부서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시설물 관리부서, 협업부서	시설물 관리부서, 협업부서

① 신고 및 초기 전파

- 중대시민재해* 발생 즉시 최초 발견자 경찰서(112), 소방서(119) 신고 및 관리팀 통보

* 공중이용시설 내 사망 1명 이상, 부상 또는 질병 10명 이상 발생 사고

-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300-5119)로 사고 사실 전파
- 市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SNS)을 통해 신속하게 초기 상황 전파

※ 시의회 별도 재난안전상황실 없기에 시 사회재난과 협조를 통한 연락체계 마련

② 현장 긴급조치

- 시설물 관리부서는 시설 사용 통제 후, 시민·종사자 등 긴급 대피 조치(안내방송, 비상벨 또는 확성기 등)
- 사상자 응급구조 및 병원 이송 조치(소방서 협조)

- 피해발생 장소에 재난안전선·통제선·바리케이트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 후 출입·교통통제(경찰서 협조)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보존, 목격자 및 증거 확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 방지를 위해, 출입금지 표시 및 관계자 외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사고 현장의 업무 및 활동 제한

③ 상황 보고

- 시설물 관리부서는 지휘체계* 대상 대응 공유방(카카오톡) 개설

* 의장, 부의장, 상임위, 전문위원실, 의정담당관, 의사입법지원관, 관련 담당 등

☞ 상기 외 재난 유형 및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상 추가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신속하게 현장 상황 파악 후 상기 공유방을 통해 사고 초기 개괄적인 피해 현황 등 보고

- 전담직원(연락반) 지정, 현장상황(사진 및 동영상 등) 수시 공유하고, 필요 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붙임 3)

* (상황보고서) 발생개요(발생일시, 장소, 원인 등), 피해 상황(인적 및 물적 피해), 대응 현황(조치사항, 자원투입현황, 대피 현황), 향후 계획 등

④ 상황 대응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의정담당관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 (붙임 4)

- (회의 주재) 의장(상황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사고 시설 소관 상임위 전문 의원 등)

- (참석대상) 의장, 부의장,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전문의원 및 담당

* 재난의 규모, 시급성, 영향력(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재난 상황별로 유동적으로 구성

- (회의장소) 市의회 1층 대회의실

- (소집방법) 유·무선, SNS(문자 또는 카카오톡)

< 회의절차 및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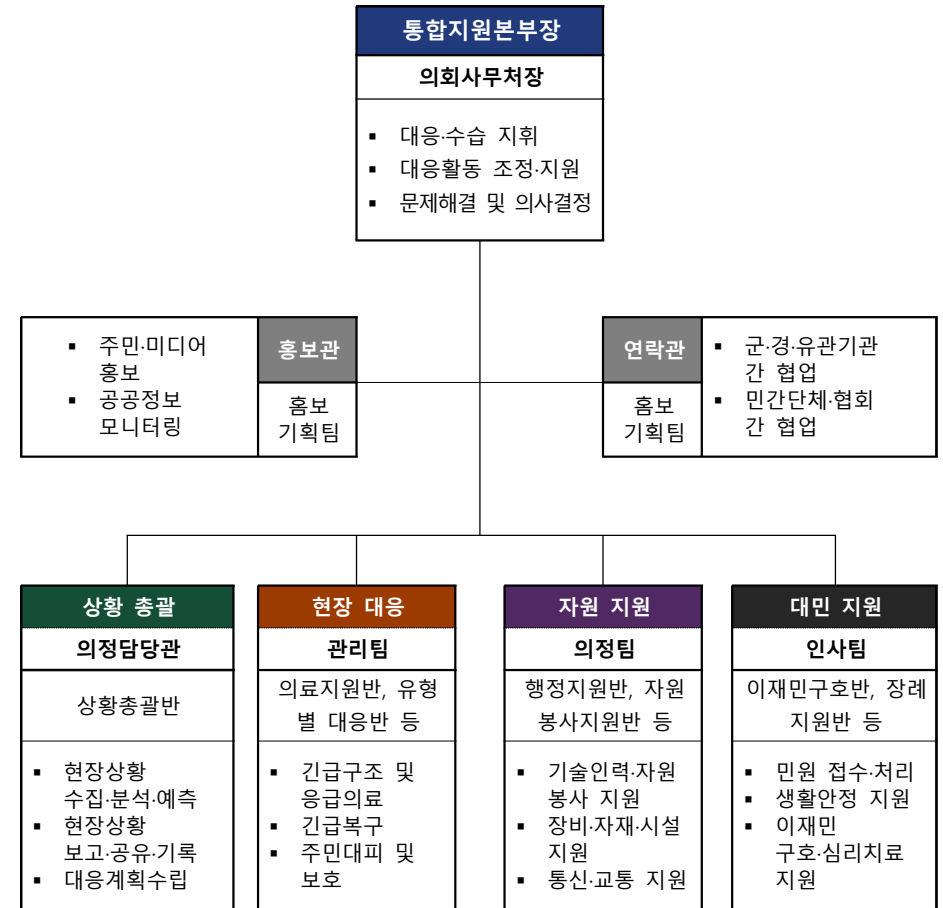
회의절차	회의내용 및 주요 결정사항
재난상황 브리핑 (관리팀장)	■현재 피해 상황 - 발생 지역, 인적 피해, 시설 피해 ■대응 상황 - 인명구조, 대피 명령 및 시설 이용제한 조치 등 - 초기진화, 수방 조치 및 응급의료 -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전기, 수도 등) - 유관기관 지원 상황
재난상황 분석토론	■분석 토론 사항 -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확산 여부 - 재난 수습 가능성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 향후 대응계획에 관한 방향 등 - 주민대피 필요 여부 및 위험구역 설정 여부 - 추가 긴급 조치사항 검토 - 정부, 유관기관 등 지원 필요 여부 - 기타 재난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 대응을 위해 결정 해야 할 사항
논의 및 결정	■비상 기구(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여부 결정 ■기타 상황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 결정 ■행정안전부 등 정부 지원 요청 여부 결정
후속조치 이행 지시	■비상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운영 ■부서별 / 유관기관 비상근무 실시 ■부서 / 기관별 보유(동원) 자원 점검(연락체계 유지) ■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에 재난 상황전파 ■기타 결정 사항 후속 조치 이행

㉔ 긴급구조통제단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운영 결정시)

○ 세부사항은 위기관리 매뉴얼(별첨)에 따라 조치 및 운영

※ 상황총괄 주관을 소관시설 관리부서장으로 변경, 기타 기능·임무·절차 등은 동일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



⑤ 구호 및 복구

㉞ 긴급 구호 조치

- (구성) 사상자가 발생 할 경우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구성
- (역할)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은 의료지원, 피해자·유가족 연락, 의료 지원, 장례 절차 지원 등 담당

① 피해자 및 가족 연락 체계 구축

- 사상자 발생 시 연락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 연락처 수배 및 조속한 연락 실시
- ※ 사고 경위(시간, 장소 등) 및 향후 절차 등 초기 안내

② 생존자, 피해자 등 대기실, 교통, 숙박시설 지원

- 필요 시 ‘市 청사관리팀’과 협의하여 상황 장기화 대비 유가족 등 편의시설을 재난 현장 인근(시의회청사 외부)에 설치지원

③ 병원 등 사상자 현황 파악 및 직원 파견

- 구조·희생자 신원 파악, 명단작성 등은 긴급구조기관(소방)에서 발표하는 피해 현황으로 일원화
- ※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종료 후에는 관리부서에서 통계 전담직원 지정하여 파악
- 필요 시 市(보건소)와 협의하여 사상자에 대한 병원 입원실, 장례식장, 장의용품 확보 및 직원 배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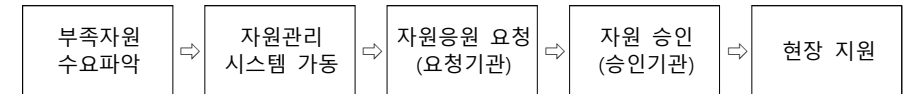
④ 각종 참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재난상황 전파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홍보기획팀) 및 자원봉사자 위치, 역할 분담 등 조정하여 재난 현장 배치 실시
- ※ 세부 사항은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내 재난대응 프로세스 준용

㉟ 긴급 복구

- 재해상황에 필요한 장비, 자원 신속 파악 후 지원 요청
- 긴급구조 및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을 자체 조달하고, 추가 필요 시 “市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지원 요청
- 필요한 자원 부족 시 “市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요청을 통해 재난상황 응원 및 지원 요청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응원 절차 >



- 이와 별개로 관내 민간기관(건설기계협회, 건축사협회 등)에 재난상황 공유 및 필요 시 소요 장비와 인력 요청
- ※ 세부 사항은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내 재난대응 프로세스 준용

⑥ 후속 조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관계전문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조치 실시(필요시)
- 사고원인을 바탕으로 개선대책 강구 및 재발 방지대책 시행(붙임 5)
- 조치결과를 시장 등 내부 재난 지휘체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 유사시설 내 동일 사고원인 여부 파악 및 개선 조치

붙임 3**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보고서 (양식)**

※ 재해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 변경 활용 가능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 보고서 (최초 보고)

< '00. 0. 00.(화) 000과 000담당 000 ☎0000 >

□ 사고개요

- (사고일시) '26. 00. 00(월) 13:58
- (사고장소) 00동 복컴 지하주차장
- (사고원인) 원인 미상의 지하층 화재발생, 현재 원인 조사 중
- (피해상황) 사망 2명(중사자 1, 시민 1), 재산피해 조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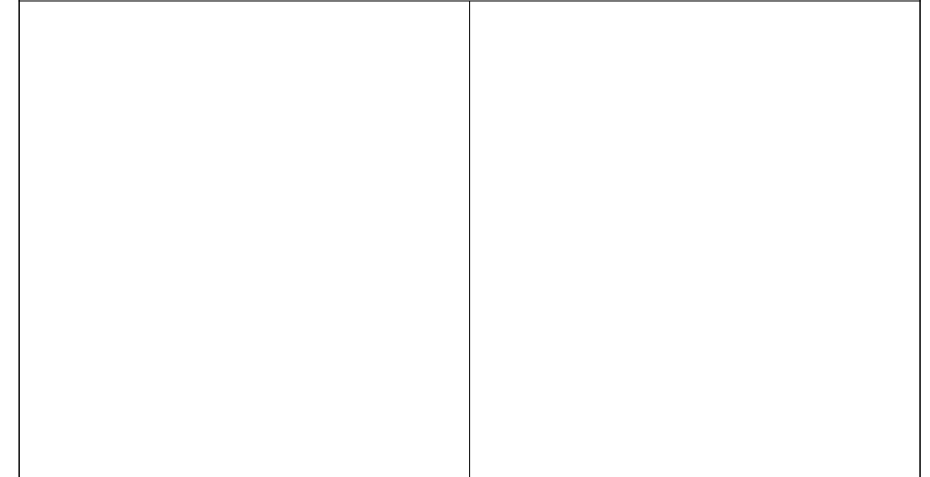
□ 응급조치 사항

- (14:00) 000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현장 작업자)
- (14:05) 00소방서 현장대응단 현장 도착
- (14:06) 홍00(시민) 000병원 이송
- (14:07) 김00(중사자) 000병원 이송

□ 향후계획

- 사상자 가족에게 연락 및 병원 입원, 장례 절차 지원
- 000시설물 출입 및 교통통제 등 2차 피해방지 조치 (경찰서 협조)
- 상황전파(대응방 운영)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준비
- 000소방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조사

붙임 : 사고 위치도 및 사고 현장사진 1부.

붙임**사고 위치도****사고 현장사진**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 보고서 (수시, 최종보고)

< '00. 0. 00.(화) 의정담당관 관리팀 000 00000 >

□ 사고개요

- 일 시 : '26. 00. 00(월) 00:00경
- 장 소 : 시의회청사 1층 로비
- 원 인 : 원인 미상의 지하층 화재발생, 현재 원인 조사중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가.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 나. 재산피해
 - 다. 그 밖의 피해

□ 응급조치 및 복구 사항

- 조치사항 : 구급사항, 복구사항 등
- 동원사항
 - 소방인력 및 장비
 - ▶ 인력 : 명(소방공무원 00명, 의용소방대 00명)
 - ▶ 장비 : 대(00대, 00대, 00대)
 - 소방 외의 인력 및 장비
 - ▶ 인력 : 명(공무원 00명, 경찰관 00명, 민간인 00명)
 - ※ 민간인 : 명(대한적십자사 00명, 자율방재단 00명)
 - ▶ 장비 : 대(00대, 00대, 00대)

□ 지원 및 협조사항 (유관 기관·단체 등)

- (필요시 작성)

□ 향후 전망 및 대책 (구조, 구호, 복구, 피해자 지원 등)

-

붙임 : 피해대응 상세 내용, 인명피해 세부현황 각 1부.

붙임 1

피해 대응 상세 내용

□ 금일 주요 추진실적

- 단체장 및 부단체장 활동사항
 - (단체장)
 - (부단체장)

○ 피해자 및 가족 지원사항

- 1:1 전담공무원 지정 현황 :
- 의료비 및 장례비 등 지원 현황 :
- 심리지원 및 상담창구 운영 현황 :
- 구호물자 지급 현황 :
- 임시 거주시설, 가족대기 장소 등 지원 현황 :
-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처리 현황 :

< 피해자 및 가족 동향 >

- ▷ (사망자)
- ▷ (부상자)
- ▷ (유가족)
- ▷ (부상자 가족)

○ 주요인사 방문현황

- 부처 장·차관, 국회의원, 단체장·부단체장 등

○ 기타

□ 인근 주민 피해 현황 및 민원 조치 사항

-

• 파악된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
 • 기타 추가 보고 사항은 자율서식의 별첨으로 제출 가능
 ※ 아래 내용이 포함된 자체 보고서로 대체 가능

☐ 피해현장 임시조치 및 복구현황

- 임시조치 :
- 복구현황 :

☐ 자원봉사 및 자원동원 현황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
- 자원동원 현황 :

☐ 보험가입 실적

- 건물, 대인, 대물, 치료비 등
 - 시민안심보험 보상사항
 - 피해원인자 보험가입 현황

☐ 시간대별 조치사항 *(날짜와 시간을 명확하게 표기)*

- 상황관리반 구성·운영(00.00, 00:00)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00.00, 00:00)
- 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00.00, 00:00)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00.00, 00:00)
- 긴급대책회의(00.00, 00:00)
- 합동분향소 설치(00.00, 00:00)
- 사상자 가족 전담공무원 배치(00.00, 00:00)
- 심리지원반 구성·운영(00.00, 00:00)
- 기타 주요사항

붙임 2

인명피해 세부 현황

☐ 사상자 현황

• 파악된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재

순 번	성명 (생년)	성별	상태	주 소	병원 (장례식장)	가족연락 여부	비고
1	000 (00 년)	남/ 여	경상 (저체온)		00병원	완료 (딸)	00.00. 퇴원 예정
2	000 (00 년)	남/ 여	중상 (뇌출혈)		00병원	완료 (아들)	
3	000 (00 년)	남/ 여	사망 (00.00.)		00장례식장	완료 (아내)	00.00. 발인
4	000 (00 년)	남/ 여	실종 (00.00.)			연락 중	
5							
6							
7							

※ 재해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 변경 활용 가능

중대시민재해 발생 상황판단 회의자료

□ 사고개요

- 일 시 : '26. 00. 00(월) 00:00경
- 장 소 : 시의회청사 1층 로비
- 사고원인 : 원인 미상의 지하층 화재발생, 현재 원인 조사중
- 피해상황
 - 인명피해 : 사상 0명(사망 0, 부상 0), 응급환자 분류(중·정상) 이송
 - 시설피해 : 조사 중
 - 환자이송 상황 : 00명(환자 00, 직원 0) ※ 이송병원 현황(별첨)

□ 응급조치 사항

- 14:00 000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현장 작업자)
- 14:01 시 재난안전상황실 사고 발생 보고 (시설물 담당자)
- 14:05 00소방서 도착,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수행
(건물 내부에 대피하지 못한 요구조자 다수, 다수인명피해 발생가능)
- 14:05 00경찰서 현장 출동 및 대피지원 등 사고발생 현장 통제
- 14:05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현장 가스차단 조치 요청 등 유관
기관에 2차 피해확산방지 조치 및 복구 지원 요청

⋮
⋮
⋮

□ 회의안건 ☞ 아래 내용을 참조하되 재해 상황에 따라 변경 활용

①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결정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 위기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이 【심각단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결정필요

재대본 가동기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② 실무반 편성 및 유관기관 역할에 관한 사항

- (실무반 편성) 상황 총괄, 홍보 등 역할 분담
- (실무반별,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③ 향후 중점 대처사항

○ 긴급구호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소방본부장(관할 소방서장)은 재난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 및 긴급복구(市 협조)·현장 교통통제(경찰 협조)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을 구성하여 의료지원, 피해자·유가족 연락, 의료지원, 장례 절차 지원방안 등 마련

① 피해자 및 가족 연락 체계 구축

- 사상자 발생시 피해자 및 가족 연락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조속히 가족에게 연락

② 생존자, 피해자 등 대기실, 교통, 숙박시설 지원

- 시(회계과) 협조 수습 장기화 대비 유가족 등 편의시설을 재난 현장 인근에 설치 지원

③ 후송병원, 영안실 등에 직원 파견

- 보건소와 협의하여 사상자에 대한 병원 입원실, 장례식장, 장의용품 확보 및 직원 배치 지원

④ 병원별 사상자 현황 파악

- 구조·희생자 신원파악, 명단작성 등은 긴급구조기관(소방)에서 발표하는 피해 현황으로 일원화

⑤ 급식, 구호물품 배부, 자원봉사자 배치(복지보건국, 자치행정국)

⑥ 각종 참여 자원봉사자 등 역할 분담 조정 담당 직원 배치

○ 사고 현장 긴급구조·구급·복구 등 대응인력 안전확보 철저

4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

- 관리팀은 필요한 자원 신속히 파악 및 응원 요청
 - 긴급구조 및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을 자체 조달하고, 추가 필요시 관할 “市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지원 요청
 - 필요한 자원 부족 시 “市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요청을 통해 재난상황 응원 및 지원 요청
 - 이와 별개로 관내 민간기관(건설기계협회, 건축사협회 등)에 재난상황 공유 및 필요 시 소요 장비와 인력 요청
 - ※ 세부 사항은 유형별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내 재난대응 프로세스 준용

장비·자재 동원 순서

- ① 긴급구조통제단 자체조달
- ②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원
- ③ 시의회 자원 동원 및 市 자원 협조

붙임 5 재발방지 계획서 [양식]

□ 사업장 개요

시설물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설종류	업무시설	시설규모	
사고일시	년 월 일	시	
소재지		사고종류	
구조물손실	백만원	인적피해	사망()명, 부상()명
장비손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여부	해 당 () 해당없음 ()

□ 재해자 개요

성명	생년월일					
직업	상해종류	상해부위	가해물			

※ 위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동일재해로 재해자가 다수 발생된 경우 추가 기재

□ 재해발생 과정 및 원인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	재해관련 취급설비, 작업공정의 운전 또는 상황과 당시 재해자의 행동 및 사고 발생과정 등을 기록함. - 육하원칙(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의하여 작성함.	
	1) 재해발생 과정	
	언제 (재해발생일시)	
	어디서 (지역, 공간 등 재해발생장소)	
	누가	
	무엇을 사용, 어떤 환경에서 (작업환경)	
	무엇을 하기 위하여 (작업내용 및 목적)	
	어떻게 하다가(재해자의 동작)	

어떻게 재해를 당함(발생형태)		
2) 재해발생원인		
가. 인적원인		
나. 물적원인		
다. 관리적원인	① 기술적 원인	
	② 교육적 원인	
	③ 작업관리상 원인	

□ 재해 재발방지 대책

○ 인적원인에 대한 대책(재해원인 중 인적원인이 있는 경우)

-

○ 물적원인에 대한 대책(재해원인 중 물적원인이 있는 경우)

-

○ 관리적 원인에 대한 대책(재해 주요 원인 한가지 선택)

- 기술적 원인에 대한 대책
- 교육적 원인에 대한 대책
- 작업관리상 원인에 대한 대책

○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각기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

참고

유해 · 위험요인 목록(예)

□ 건물

연 번	부재명	세부항목	결함사례
1	박리,박락 (타일,화강석)	박리,박락 (타일,화강석)	사례1)타일 박리 및 탈락 사례2)화강석판 탈락
2	도장면 박리,박락	도장면 박리.박락	사례1)내벽체 도장 박리 및 박락 사례2)외벽체 도장 박리 및 박탈
3	누수	지하벽체 누수	사례1)지하벽체 누수 사례2)지하벽체 누수
4	누수	화장실 누수	사례1)화장실 누수 사례2)화장실 누수
5	균열	균열	사례1)보 전단균열 사례2)슬래브 중앙부 균열
6	철골부재결함	철골부재결함	사례1)내부 마스트 부식 사례2)테크 플레이트 부식
7	철근부식	철근부식	사례1)보 철근노출 사례2)피복두께 부족 철근
8	콘크리트, 재료분리	콘크리트, 재료분리	사례1)보 재료분리 사례2)보 재료분리
9	유지관리, 결함	유지관리, 결함	사례1)맨홀 내부 청소불량 사례2)벽체절단 후 방치
10	유지관리, 결함	유지관리, 결함	사례1)보 절단 (설비 덕트 작업) 사례2)지붕층 우수 드레인 배수불량
11	유지관리, 결함	유지관리, 결함	사례1)지붕층 피뢰침 기능 상실 사례2)지하층 피트 설비 폐기물 방치

붙임 6

비상연락망

구분	기관	주요 조치내용 등	담당자 연락처
의회	의정담당관 관리팀	• 산업재해 예방업무 • 산재사고 발생 보고 • 조치사항 협의 등 • 재난상황 유지/청사관리 • 청사 관련 재난 대응	• (담당) 044-300-7231 • (담당자) 044-300-7232
	사회재난과 중대산업재해 담당	• 산업재해 관련 자문 등	• (담당) 044-300-4571 • (담당자) 044-300-4571~4
시	재난안전상황실	• 재난상황 유지	• 044-300-5119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 본청 청사관리 • 청사 관련 재난 대응	• (담당) 044-300-6541 • (담당자) 044-6542~6550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 의료인력 지원 등	• 044-301-20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중대산재 발생 보고 • 산재조사표 제출 • 산업재해예방 질의	• 042-480-6300
유관 기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예방지도과	• 건설산재예방 질의	• 042-480-6307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	• 안전보건 세부수칙 질의 • 안전보건 각종정보제공	• 042-620-5600
	소방서	• 화재사고, 응급조치 등	• (국번없이) 119 - (구조과) 044-300-6119 - (대응과) 044-300-3119
	세종경찰청 공공안전과	• 상황 협력	044-559-2483
	경찰서	• 현장 통제, 치안 유지	• (국번없이) 112 • (보람지구대) 044-320-8103 • (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044-330-0352
	한국전력	• 전력 차단	• (국번없이) 123 - (주간) 044-861-4275 - (야간) 044-861-4261
	충부도시가스	• 가스공급 차단	• 044-866-6547
	지역난방공사	• 난방공급 차단	• 1688-2488 - (열수송부) 044-861-5382
	32사단	• 작전과	• 042-829-6401
		• 세종경비단	• 044-862-2972

구분	기관	주요 조치내용 등	담당자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학교안전과	• 044-320-1713
	한국토지주택공사	• 세종특별본부 안전관리단	• 044-860-7918
	KT	• CM팀	• 044-861-7010
	한국가스공사	• 안전환경부	• 042-229-3585
	한국가스안전공사	• 검사2부	• 042-719-3034
	세종도시교통공사	• 안전감사실	• 044-850-0363
	세종 시설관리공단	• 안전보건팀	• 044-850-115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조합	• 기술지도과	• 044-865-2132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고객지원부	• 042-388-5640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	• 농어촌사업부	• 044-860-3353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 구호봉사팀	• 042-220-0124

III 사고 유형별 발생 시 표준 대응방안

1 화재

(1) 개요

- 화재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의 신속한 신고, 진화 및 대피 유도 등을 통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2) 평상 시 예방 /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등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화재현황) 현재, 00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 00시설에 총 00명의 인원이 있으며, 일부 인원이 연기에 질식되어 호흡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속히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방송 문안 예시(비상방송은 반드시 2회 이상 반복)

(화재경보 알림 경보음-사이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비상구를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는 대단히 위험하오니, 절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대피 요원의 유도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알림 경보음-사이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가 많을 경우 팔과 무릎으로 기어서 연기층 아래로 통과하고,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을 열어야 할 경우 손잡이를 만져서 뜨거우면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알림 경보음-사이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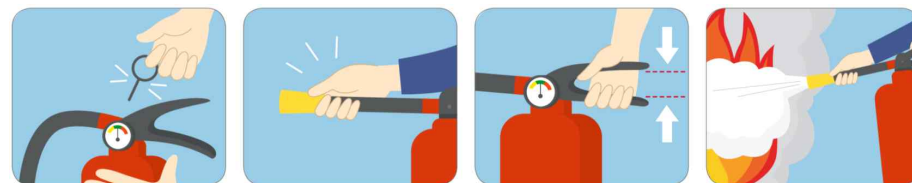
“지하공간의 경우 코와 입을 수건이나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 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어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두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알림 경보음-사이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시설의 상주유동인원 특성을 확인하여 한국어 외 외국어에 대하여 안내방송을 준비

- 상시 모니터링(CCTV 관제 등)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 소화기, 옥내·옥외소화전 등 소화설비 비축 및 작동상태 점검
- 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 경보설비 작동상태 점검
-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등 피난설비 작동상태 점검
- 방화셔터, 방화문 점검 및 관리 등

소화기 사용법



1 안전핀을 뽑는다.

2 노즐을 잡고 불뿌를 향한다.

3 손잡이를 움켜쥔다.

4 분말을 골고루 쏜다.

소화전 사용법



1 소화전 문을 연다.

2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3 밸브를 돌린다.

4 불을 향해 쏜다.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1 손수건, 옷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보호한다.

2 자세를 낮춘다. (연기보다 낮은 자세)

3 한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4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3)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평소 행동수칙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을 것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는 교체할 것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할 것
- 전기기구 관리 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퇴근할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할 것

(4)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 어린이, 임산부, 노인, 장애인 및 거동이 어려운 사람 우선대피 조치
- 대피 유도반은 내부 잔류자가 없는지 확인(화장실 등)
- 연기가 가득한 장소를 지날 때에는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이동
- 닫힌 문을 열 때에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고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문을 이용하거나, 외부 도움 요청
-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면 미리 지정해 둔 재집결 장소(청사 서측 광장)로 이동하여 인원 확인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수와 최종적으로 확인된 위치 설명
- 건물 출입통제 및 재진입 절대금지
- 건물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경우에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이때,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
- 일반용 승강기는 이용을 금지하고 비상계단 이용. 단, 피난용 승강기는 이용가능
- 전기시설 차단 등 설비 통제 요청(市 청사관리팀)

< 단계 별 화재대응 사항 >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대비 단계	○ 기상청의 건조주의보 등 특보관련 사항 ○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화재가 빈발 ○ 취약시기 다중밀집시설의 화재발생 개연성 증가 ○ 사회불만자 등에 의한 다중밀집 시설 방화 급증	○ 비상대비태세 강화 - 상황보고체계, 화재 특별 경계근무 실시 ○ 사고예방활동 강화 - 취약시설 긴급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추진 실태 확인 ○ 비상대비태세 유지 - 비상상황관리체계 점검 - 당직근무 철저 및 순찰강화
대응 단계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초기 화재 발생신고 ○ 인명.재산피해 예측 불가 ⇒ 자체 소화 및 인근 소방서 출동, 초기 대응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전개	○ 초기진압 - 화재유형에 따라 자체 장비로 초기 진압 - 현장상황 모니터링 지속 통보 ○ 화재신고 ○ 상황보고 및 전파 - 화재유형별 관련 기관통보 : (전기, 가스 안전공사 등) ○ 현장 활동 지원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지원 - 피해영향평가 및 사고원인 조사·분석 - 상황보고서 작성 - 화재 등 재난사태 뒷정리(청소 등) 및 시설물 복구

참고 1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편성표

자위소방대		소 속	성 명	개 별 임 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지휘 통제팀	대 장	세종시의회	의회사무처장	총괄 지휘	044-300-7200
	부대장(Ⅰ)	세종시의회	의정담당관	대장 보좌·대행	044-300-7210
	부대장(Ⅱ)	세종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현장지휘	044-300-7310
현장 대응팀	지휘반	세종시의회	최재학	업무총괄(팀장)	044-300-7231
		세종시의회	서현모	비상방송, 자위소방대 소집, 화재신고	044-300-7232
	진압반	세종시의회	손구영	초기소화 (소화기살포, 옥내소화전)	044-300-7445
		세종시의회	고경환		044-300-7414
	구조구급반 및 물품반출	세종시의회	태상호	응급구조 및 물품반출	044-300-7447
	대피유도반	세종시의회	김재원	대피유도(6층)	044-300-7534
		세종시의회	한태희	대피유도(5층)	044-300-7443
		세종시의회	문건아		044-300-7413
		세종시의회	김빛나	대피유도(4층)	044-300-7475
		세종시의회	오성문		044-300-7517
		세종시의회	곽희임	대피유도(3층)	044-300-7234
		세종시의회	이찬양		044-300-7274
		세종시의회	김용모	대피유도(2층)	044-300-7233
		세종시의회	전은정		044-300-7272
		세종시의회	최재식	대피유도(1층)	044-300-7061
		세종시의회	박지연		044-300-7061
	초기대응체계		소 속	성 명	개 별 임 무
					비상연락체계 사무실
야간 및 휴일	세종시의회· 시청		재난상황실	상황전파 및 소방서 신고	044-300-5119
	세종시청 (청사관리팀)		당직자		044-300-6926

참고 2 외부기관 비상연락체계



참고 3 | 피난유도 절차 및 피난경로(집결지) 설정

구분	대응방법			
비화재보	안내방송 및 각 층별, 구역별 피난유도자를 배치하여 비화재보 상황 전파			
화재 시	구역		피난유도자 (배치장소)	피난유도 장비를 활용한 피난방법
	동	층		
시의회 청사	시의회 청사	전층	청사 서측광장	1. 경광봉 활용하여 양방향 피난을 유도하고 피난계단→지상 1층으로 피난유도 2. 계단사용 불가능 할 시 완강기 사용

2. 피난경로

동별	층별	피난경로 개수	피난유도자	피난구조설비	집결지
시청사	전층	2	11	-	시의회청사 서측 광장



3. 집결지

집 결 지	장소	시의회청사 서측 광장
	확인사항	재실자 피난현황 및 재진입 방지



※ 비교. 소방안전관리자는 대상물의 구역별(동별, 층별) 화재취약장소 및 인명피해우려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피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 지진

※ 소방 시 피난 유도 계획 등 참조 및 자위소방대 피난 유도 등 역할 수행

(1) 개요

- 지진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시 준비해야 할 사항, 지진 발생 전후 행동요령 등을 규정

(2) 지진 관련 용어

- 지진 : 지구내부 및 지각에서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이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에 충격을 주어 지표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진원 : 지진이 발생할 때 지반파괴가 시작된 곳(지표면 내부)
- 진앙 : 진원의 바로 위 지표면의 지점
- 지진 규모 : 지진의 방출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
- 진도 : 사람 또는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정해놓은 등급
- 지진해일 주의보 :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경우
- 지진해일 경보 :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m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경우

(3) 평상 시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지진 국민행동요령 교육, 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등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상시 모니터링(CCTV 관제 등)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 지진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지진대피소를 사전에 파악할 것

※ 지역별 지진대피소는 행정안전부(www.mois.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 가능

- 시설물 요소요소에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 부착
- 시설물 담장은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한 부분은 사전에 보수
- 전기 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여 불안정한 부분 수리
-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라이프라인을 차단하는 방법 교육
- 지진 발생 시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물 고정·제거 등
- 자동판매기, 책장 등 무거운 물체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하거나 필요 시 이동 및 제거 조치 등
- 정전 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 지진 발생 시 대피유도원의 임무와 역할 등 수시교육
- 지진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설치(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기상청 지진정보 알리미)

※ 안전한 피난경로 확보를 위한 체크사항

- 복도, 통로 등에 대피 시 장애가 되는 물건이 놓여 있지 않은가?
- 가구류 등의 전도(넘어짐) 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복사기나 자동판매기와 같이 중량이 큰 물체의 이동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 가구류의 전도·낙하·이동에 의해 창문 유리가 깨질 가능성은 없는가?
- 가구류의 낙하나 이동으로 피난 경로의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없는가?

(4)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① 지진 발생 시

- 관리팀은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안전한 곳에 대기하도록 방송 실시 등
 - ※ 직원들도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기
- 본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등 안전한 곳에서 신체 보호
 - ※ 탁자가 없을 경우 방석이나 가방, 손 등으로 머리 보호
- 창문이나 가구에 가까이 가지 말고 낙하물에 주의할 것

② 진동이 멈춘 후

- 진동이 끝나면 전 고객 및 직원 대피에 총력
- 지진으로 인한 화재, 폭발, 붕괴에 주의하며 계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파악해 둔 지진대피소로 고객 및 직원 대피
-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라이프라인 차단
-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

(5) 지진 발생 대응 시나리오(상황별)

-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

지진으로 흔들릴 경우	흔들림이 멈춘 경우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잡음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 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	건물 밖에 나온 경우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림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 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
대피 장소를 찾을 경우	대피장소에 도착한 경우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 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 으로 대피 (차량 이용 금지)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 에 따라 행동

(5) 지진 발생 대응 시나리오(장소별)

-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대응

공중이용시설에 있을 경우	극장, 경기장 등에 있을 경우
• 진열장에서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이동 •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방 등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있다가,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학교에 있을 경우
•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 ※ 지진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됨	•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꼭 잡음 •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
건물안에 있을 경우	건물밖에 있을 경우
•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 •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후, 밖으로 이동	• 떨어지는 물건에 대비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

< 지진 단계 별 대응 사항 >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o 규모 2.9 이하 지진 : 사람 몸으로 느낄 수 없고 지진계만 기록규모 2.9 이하	o 기상청 지진 통보 모니터링
	o 규모 3.0 ~ 3.9 지진 : 건물 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진동 느낌	o 지진 발생 내용 초기상황 보고 o 기상청 지진속보를 시청 재난안전상황팀에 전파 [044-300-5119] o 지진발생 현황 및 국민행동요령 등 관련 방송 홍보협조
주의 (Yellow)	o 규모 4.0 ~ 4.9 지진 : 모든 사람이 지진을 느끼며 경미한 피해 발생	o 지진 발생 내용 초기상황 보고 o 기상청 지진속보를 시청 재난안전상황팀에 전파 [044-300-5119] o 지진 발생 현황 및 국민행동요령 등 관련 방송 시청 홍보협조 o 피해 상황 보고 및 사태 수습
경계 (Orange)	o 규모 5.0 이상 지진 : 모든 사람이 지진을 느끼며 진동에 따른 피해 발생	o 대피 방송 실시[관리팀] o 지진 발생 및 피해 상황보고 - 기상청 지진속보를 시청 재난안전상황팀에 전파 [044-300-5119] - 지진 발생 현황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협조 - 피해상황 보고 및 사태 수습
심각 (Red)		

3 테러

(1) 개요

- 폭발물 설치, 생·화학무기 살포, 난동 등 테러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사항·대응활동 및 유관기관의 협조사항 규정
※ (경찰서) 112 / 보람지구대: 044-866-5112 / (국정원) 111

(2) 평상시 대비 활동

-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시설물 내·외부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비(경찰, 소방서, 군부대 등)
- 시설물 요소요소에 테러 발생 시 행동 요령 부착
- 취약지역(주차장, 건물외곽, 화장실, 쓰레기통 등) 집중관리 등

(3) 테러 의심 또는 피해 상황 신고

테러가 의심될 때는 신속하게 신고하십시오	신고방법
① 테러 의심 또는 피해 상황 목격 시 신속하게 신고	정확한 위치 테러 의심 또는 피해 상황 현장분위기 등 구체적으로 신고
② 테러 위협 전화를 받았을 경우, 상세히 기억하여 신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테러에 대해 예의 주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한 후 국번없이 111·112에 신고	

(4)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가. 폭발물 테러

폭발물 의심물품 또는 차량 발견 시	폭발물이 폭발하는 경우
① 절대 손대지 말고 신속히 대피 후 경찰에 신고	①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 보호
②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건물밖으로 탈출하고,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므로 이용 금지	② 폭발이 종료되어도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려 있다가 폭발 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피한 후 111·112에 신고	

나. 화학·생물 테러

화학 생물 테러가 의심되는 경우 <증상> 눈물, 근육경련, 고열 복통,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
① 오염공기가 감지되면 손수건, 휴지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호흡
② 오염지역과 오염원을 재빨리 확인 후 신속히 현재 위치에서 탈출
③ 오염지역에서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경우, 비누로 얼굴과 손 등을 깨끗이 씻고 응급치료

다. 핵폭발·방사능 테러

폭발이 느껴졌을 경우
① 핵폭발 섬광을 느끼면 반대 방향으로 엎드려 눈, 귀를 막고 입을 벌림
② 즉시 지하대피소나 엄폐물을 찾아 몸을 숨김
③ 건물, 대피소 등으로 대피 후 창문을 잠그고 에어컨·히터·환풍장치 운전 정지

라. 억류·납치 테러

억류 납치 테러를 당했을 경우
① 납치범을 자극하지 말고 몸값 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녹음을 요청할 때 응함
② 눈을 가릴 때 주변 소리, 냄새, 범인 목소리, 이동할 경우 도로 상태 등을 최대한 기억

< 테러 단계 별 대응 사항 >

시설위기 경보	판 단 기 준	활 동
평상시	○ 테러상황 징후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	모니터링
비상 1단계	○ 이상 행동을 보이는 관람객 또는 유관자 발견 ○ 폭발물, 생·화학물질로 의심되는 물건·물질 발견 또는 소지자 발견 ○ 총기 휴대가 의심되는 관람객 또는 유관자 발견 ○ 관람객 또는 유관자의 집단행동 징후 포착 ○ 테러 의사 협박 전화 수신	징후활동 감시
비상 2단계	○ 폭발물, 생·화학물질로 확실시되는 물건·물질 발견 또는 소지자 발견 ○ 총기 휴대가 확실시되는 관람객 또는 유관자 발견 ○ 관람객 또는 유관자의 집단행동 포착 ○ 테러 감행 협박 전화 수신	초동대응
비상 3단계	○ 폭발물 폭발로 인명 및 시설피해 발생 ○ 생·화학물질 살포로 인명 및 시설피해 발생 ○ 총기난동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발생 ○ 관람객 또는 유관자의 집단행동으로 운영지장	총력대응

참고 1 청사방호 근무 편성표(안)

□ 근무 편성

- (청사방호 반장) 관리팀장
- (민원대응 반장)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도환위, 행복위)

□ 근무 편성표(안)

구분	1단계 <초기>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의정담당관	의정담당+의사입법		의정담당+의사입법+전문위	
상시	관리팀(최재학, 서현모, 최재식) + 본청 지원(청경 2명 이상)				
1조 (9:00~10:30)	박경용 김관유 김용모	박경용 박용민 장래복	김용모 고경환	박경용 박용민 장래복 이종철	김용모 고경환 김재원
2조 (10:30~12:00)	박용민 이상호 박상수	김관유 최재학 이상호	한태희	김관유 최재학 박경용 김재덕	이상호 한태희 태상호 배갑식
3조 (13:00~14:30)	박경용 김관유 김용모	박경용 박용민 장래복	김용모 고경환	박경용 박용민 장래복 이종철	김용모 고경환 김재원
4조 (14:30~16:00)	박용민 이상호 박상수	김관유 최재학 이상호	한태희	김관유 최재학 박경용 김재덕	이상호 한태희 태상호 배갑식
5조 (16:00~17:30)	박경용 김관유 김용모	박경용 박용민 장래복	김용모 고경환	박경용 박용민 장래복 이종철	김용모 고경환 김재원
6조 (17:30~종료 시)	박용민 이상호 박상수	김관유 최재학 이상호	한태희	김관유 최재학 박경용 김재덕	이상호 한태희 태상호 배갑식

참고 2 청사방호 근무 편성표(안)

□ <1단계 : 초기단계> 집회·시위 정보 입수 및 개시

- 민원 소관부서 사전 동향 파악·보고 및 1차 대응 실시(대화·설득)
 - 관련 부서 집회 규모 및 단계에 따른 대응책 마련 등 상황 관리

구분	주요 조치사항
민원대응반 (소관 전문위원)	· 즉시 집회 규모 파악 등 동향 전파(→ 의정담당관) · 요구사항 파악, 대응책 마련 등 상황관리(현장 상주) 및 집회 주최 측 대화·설득 등 상황 중식 노력
청사방호반 (의정담당관)	· 청원경찰 및 경찰서와 동향 공유(필요 시 경찰인력 대기 요청) · 청내 방송, 출입통제 시스템 가동 여부 확인(필요시 승강기 운행 제한) ※ 집회 관련 채증자료 수립(행정지원반)
유관기관 (남부경찰서)	· 정보관 배치(동향 공유 및 경찰 필요인력 파악, 배치 준비)

□ <2단계 : 경계단계> 불법 집회시위 변질되어 청사진입 예상

- 민원 소관부서 자체 대응책 전개 및 청사 출입구 폐쇄

구분	주요 조치사항
민원대응반 (소관 전문위원)	· 민원대응 책임자가 집회 대표자와 면담 추진 · 자체 대응책 추진(직원 동원·방어선 구축 등 진입 저지) · 필요 시 市(운영지원과) 청사방호 지원 요청
청사방호반 (의정담당관)	· 청내 방송(불법 집회 시위 시 통제 안내) · 외부 출입 통제(1층·지하: 지문/카드 등록자, 2층: 폐쇄) ※ 단,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위장소 반대 방향의 출입문은 민원인 신분 확인 후 출입 조치 · 3~6층 복도 출입문 통제(지문/카드限) 및 시위 장소와 가까운 방향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 경찰 인력 지원 요청, 불법행위 채증 준비(행정지원반)
유관기관 (남부경찰서)	· 사복경찰 및 정보관 추가 배치 · 경찰 인력 집회장 대기 및 청사 진입 저지

□ <3단계 : 위기단계> 불법 집회시위대 청사 무단점거

- 청사 방어선 구축 강화, 점거자 퇴거 요청 및 경찰 병력 투입
-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 및 필요 시 집회 관계인 고소·고발 등 실시

구분	주요 조치사항
민원대응반 (소관 전문위원)	· 시위대 전면에 청사방호반, 행정지원반 추가 배치(1선 방어) · 불법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진해산 지속 권고
청사방호반 (의정담당관)	· 출입 통제시스템 유지 및 모든 엘리베이터 운행 중지 · 점거자 퇴거명령 - 불응 시 시설 보호 및 강제 퇴거 요청(→ 경찰서) · 119구급대 지원 요청, 지휘부 동선 확보 및 경호 ※ 청사 시설물 정비 보강 및 외부기관 근무자 안내(행정지원반)
유관기관 (남부경찰서)	· 경찰병력 투입 · 퇴거명령 불응 시 연행

❖ (대규모 시위: 2~3단계) 전직원 배치 및 상황 대응(외부 출입구 별 부서 지정)

	방어선 위치	소관 부서	소관팀
2층	외부 출입문	의사입법담당관	· 입법지원팀 / 의사기록팀(자료 채증)
1층	남문(정문)	의정담당관	· 관리팀 / 의정팀
	동문		· 홍보기획팀
	북문		· 인사팀
지하	외부 출입문	의사입법담당관	· 정책팀

4 침수

(1) 개요

-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다중이용시설물 침수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규정

(2)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기상청 정보 등 상시 모니터링 (CCTV 관제 등)
- 배수펌프, 수중모터, 모래주머니 비축 및 작동상태 점검
- 말뚝, 삽, 비닐, 마대, 곡괭이 등 수방자재 비축
- 건물주변 배수로 점검 및 준설, 필요시 시·군·구에 공공하수도 준설요청
- 건물옥상 배수로 점검 및 배수구 청소
- 건축물 침수 방지를 위한 차수판 비축 또는 설치
- 정전대비 소방설비(비상조명등 등),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점검, 유류 비축 등

(3) 태풍·호우 예보 시 행동수칙

- 창틀과 유리 사이의 채움재가 손상되거나 벌어져 있으면 유리창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틈이 없도록 보수 조치
- 위험한 물건이 건물 주변에 있으면 사전 제거
- 건물의 출입문이나 창문을 닫아둘 것
- 건물 주변에 산사태 위험이 있는지 살피고 대피 준비 등

(4)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 건축물 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및 모래주머니 등으로 조치

-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대피준비에 철저를 기할것
- 수중펌프, 배수펌프, 비상발전기 가동 및 건물주변 공공하수도 역류 시 응급조치
-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릴 것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정보를 모니터링 할 것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금지 조치
- 건물침수 발생시 시·군·구 배수담당 부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지원요청

시설위기 경보	판 단 기 준	활 동
평상시	○ 태풍 및 집중호우 빈발 시기	모니터링
비상 1단계	○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청 예보 또는 특보 발령	징후활동 감시
비상 2단계	○ 태풍·집중호우 특보가 발령되고 호우로 인하여 시설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건물주변 도로에 물이 차고, 하수도 역류현상이 발생할 때	초동대응
비상 3단계	○ 태풍·집중호우 특보가 발령되고 호우로 인하여 시설물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되거나 지하층에서 빗물이 차오르는 등 침수피해가 확대	총력대응

5 붕괴

(1) 개요

-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 노후화 등으로 인한 다중이용건축물 붕괴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규정

(2)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건축물 구조상 취약부분 상시 모니터링(CCTV 관제 등)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 행위 금지
- 불법으로 건축물의 축조 및 무단변경(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지 말것
- 시설물에 당초 설계 하중을 초과 하는 물건이나 시설은 이동 및 제거
- 시설물에 균열 및 보수부위 발견 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즉시 보수
- 붕괴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물은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즉시 보수
- 옥상 등 시설물에 설치된 배수구를 점검하고 청소실시
- 응급조치에 필요한 두꺼운 말뚝 및 지지대 등을 구조가 취약한 부분에 배치
- 긴급복구 업체와 사전 상호 협약을 추진하여 재해발생 시 긴급대처 등
- 정전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3) 붕괴 징후

- 바닥이나 기둥 등이 기울고 철근이 노출될 수 있음
 - 벽돌, 간이 벽 등이 부분적으로 붕괴됨
 - “딱딱”하는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수도, 전기, 가스 배관 등이 파손됨
 - 주차장 바닥이 기울어지고, 벽지, 바닥, 마감재 등 뒤틀림 현상 발생
 - 엘리베이터가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춤
- ※ 붕괴징후가 나타나면 비축된 지지대 및 말뚝 등으로 즉시 응급조치 등



가. 붕괴 건축물 내부 시나리오

-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여 완강기, 밧줄 등을 이용하여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재해취약자 우선 대피조치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대피 후 응급처치
- 대피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건축물에 대해 잘 아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이동
- 유리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코트, 담요, 신문, 상자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
-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될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때 추가 붕괴위험에 대비
- 잔해로 꼼짝 못 하게 되었을 때 혈액순환이 잘 될수 있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일 것
-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소리로 부르고 파이프 등을 두드리 구조요청
-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요청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고, 소리 내어 구조요청하고, 휴대전화로 119 신고)
- 공기 소통이 가능한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벽, 낙하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아래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릴 것
-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이용하지 말 것
- 가스누출 위험이 있는 장소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손전등을 사용할 것

나. 붕괴 건축물 외부 시나리오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 붕괴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 붕괴지역 주변을 보행할 때나 이동 시에는 위험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가방, 방석 등으로 머리 보호

다. 붕괴 건축물 매몰 시 시나리오

- 불필요한 활동이나 고함으로 체력을 소모하지 말 것
- 입과 코를 옷이나 천으로 가려서 먼지 흡입을 최소화할 것
- 규칙적으로 벽·파이프 등을 두드릴 것
- 휴대전화는 매몰자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전원은 규칙적으로 일정 시간에만 켜서 배터리를 최대한 절약할 것
- 2차 붕괴나 낙하물에 대비하여 단단한 테이블 밑이나 창문이 없는 단단한 벽체 옆에서 구조를 기다릴 것

시설위기 경보	판 단 기 준	활 동
평상 시	○ 건축물 및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크랙 또는 누수 발생 시	유지관리
비상 1단계	○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 필요시 ○ 건축물 개보수, 리모델링 등 구조적인 공사시	징후활동 감시
비상 2단계	○ 건축물 붕괴징후가 있어 확인 필요시 ○ 건축물의 일부 내력벽 및 기둥 파손시	초동대응
비상 3단계	○ 지반침하로 인해 건축물이 기울어져 전도 우려시 ○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 붕괴시	총력대응

(1) 개요

- 폭설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붕괴·고립 등 위기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대응활동 규정

(2) 평상시 예방 / 대비 활동

- 자체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훈련, 매뉴얼 작성·보완, 비상연락망 정비·점검
- 대피유도 방송멘트 및 비상방송설비 작동상태 확인
- 기상청 정보 등 상시 모니터링(CCTV 관제 등)
- 피난경로에 대피 시 방해가 되는 물품 등 적치물 제거, 비상구 폐쇄행위 금지
- 폭설대비 제설도구 비축(제설삽, 제설밀대, 사다리, 안전로프 등)
- 모든 시설물의 지붕과 배수구 등 점검
- 폭설대비 건물균열 등 구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구조보강
- 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폭설 하중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 후 대책 강구
- 제설장비(의복, 신발, 삽, 염화칼슘, 소금, 모래 등) 비축
- 자체 제설작업이 안될 경우 지자체 신고 및 제설전문업체와 사전 협약 체결 등
- 정전대비 소방시설, 비상발전기, 누전차단기 등 작동상태 점검

(3) 위기상황 대응 시 주의사항

가. 제설작업 준비

- 눈이 쌓인량과 눈상태(건식눈, 습식눈)를 확인
- 제설에 필요한 장비 및 자재 준비
 - ※ 제설삽, 제설밀대, 결빙분쇄봉, 안전로프, 신발, 사다리, 사다리차 등
- 제설인력 및 제설작업구간을 정하고 제설시 안전수칙을 사전교육 실시

나. 제설 실시

- 신속한 대피 안내방송과 위기단계별 조직과 임무 수행
- 대설주의보·경보 등 필요시 지붕, 출입구, 건물 주변 등에 제설제 살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 건물의 지붕전체의 눈과 얼음 축적상태를 모니터링

- 로프, 사다리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제설실시
- 제거되는 눈이 건물 배수구나 소화전 등 설비를 덮지 않도록 주의
- 녹은 눈에 의해 건물 내 침출 또는 범람이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
 - ※ 대설로 인한 붕괴 발생 시 붕괴 위기상황 참고하여 대응

시설위기 경보	판 단 기 준	활 동
평상시	○ 대설 빈발 시기	모니터링
비상 1단계	○ 기상청의 자연재해(대설) 등 특보 발령	징후활동 감시
비상 2단계	○ 폭설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 지붕에 설계하중 이상의 눈이 쌓일 때 ○ 적설하중으로 인한 지붕과 건물의 손상·균열이 감지될 때 ○ 창문과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때 ○ 기타 건축물의 붕괴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할때	초동대응
비상 3단계	○ 폭설에 따른 적설하중으로 인해 다중이용 시설의 붕괴발생 ○ 다중이용시설의 연쇄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 확대	총력대응